사업참가규정

제정: 1992. 12. 30. 개정: 2010. 2. 19. 개정: 1995. 5. 29. 개정: 2011. 6. 28. 개정: 1997. 5. 29. 개정: 2017. 11. 2. 개정: 1997. 10. 21. 개정: 2019. 2. 19. 개정: 1998. 7. 28. 개정: 2020. 2. 20. 개정: 2004. 3. 18. 개정: 2005. 9. 26.

개정: 2006. 2. 24. 개정: 2006. 12. 12.

제1조(목 적) 이 규정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정관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 사업 중 정관 제4조제1호의 정보통신 관련 표준의 제정 및 보급에 관한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참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협회 사업의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2.20.>

- 제2조(사업참가자의 종류와 자격) ① 협회 사업에 참가하는 자(이하 "사업참가자"라 한다)는 정회원과 준회원, 협력회원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0.2.19., 2020.2.20>
 - ② 사업참가자는 협회의 목적과 사업에 동의하고 사업에 참가하는 자로서 모든사업에 직접 참가하는 정회원과 1개 기술위원회 산하 1개 프로젝트그룹에만 참여하는 준회원, 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인 협력회원으로 구분한다. <개정 1997.10.21., 2000.12.29., 2004.3.18., 2010.2.19., 2020.2.20.>
 - ③ 삭제 <2017.11.2.>
 - ④ 협회는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표준자문 위원으로 둘 수 있으며, 표준자문위원은 표준총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00.12.29., 2010.2.19.>
- 제3조(사업참가자 모집 및 신청) ① 협회는 연 1회 정기적으로 중앙일간지나 협회의 간행물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업참가 안내공고를 게재하여 공개적으로 사업참가자를 모집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 2011.6.28.>
 - ② 협회사업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업참가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업참가신청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9.>

제4조(분담금) ① 사업참가자는 별표 1에서 정하여진 구좌수 이상의 분담금을 매년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협회 임원으로 선임된 사업참가자는 전년도의 납입실적 등을 감안하여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1997.10.21., 2010.2.19.>

- ② 사업참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을 기부금으로 납입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부금은 그 금액에 공금리를 적용하여 얻은 과실금이 당해년도 분담금 이상으로 되어야 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실금은 그 이후의 사업연도의 분담금으로 계속 충당할 수 있다. 다만, 과실금액이 당해년도의 분담금보다 적게 된 때에는 그 차액을 당해년도 분담금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 ④ 분담금은 당해년도의 3월 말까지 납입함을 원칙으로 하며, 분담금의 효력은 당해 년도 말까지로 한다. 다만, 부득한 사유로 납입기간 유예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회장은 3개월의 기간내에서 납입기간을 유예할 수 있다. <개정 1997.10.21., 2006.2.24., 2011.6.28.>
-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는 전년도의 사업참가자격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되기간내에 분담금을 납입하지 않은 사업참가자에 대하여는 회장이 1개월 내에 서면으로 분담금을 납입할 것을 통보하여 그 후 1개월내에 납입하지 않는 경우는 제7조의 규정에의한 투표권을 상실한다. <개정 1997.10.21.>
- ⑥ 협회 회장은 사업참가 분담금을 완납한 협회 참가자에게는 매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사업참가확인증을 발부한다. <개정 1997.10.21., 2020.2.20.>
- ⑦ 협회의 사업에 신규로 참가하는 사업참가자는 ①항의 규정에 의한 구좌수에 해당하는 분담금을 당해년도의 분담금으로 납부하며, 차년도부터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하반기(7.1.~12.31)에 신규로 참가하는 사업참가자는 ①항의 규정에 의한 구좌수에 해당하는 분담금의 1/2을 납부한다. <신설 2011.6.28., 개정 2019.2.19., 2020.2.20>

제5조(사업참가자의 의무) 사업참가자는 다음 각호의 의무를 진다.

- 1. 본 사업참가규정 및 정보통신표준화 관련 제규정의 준수의무 <개정 2020.2.20.>
- 2. 이사회 의결사항의 준수의무
- 3. 분담금의 납부의무
- 4. 정보통신표준총회(이하 "표준총회"라 한다) 의결사항의 준수 및 보급 의무
- 5. 기타 협회사업에 적극적으로 참가할 의무

제6조(사업참가자의 사업참가범위 및 권리) 사업참가자의 사업참가범위 및 권리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1997.10.21.>

- 제7조(투표권) ① 협회 사업참가자는 표준의 제정·개정·폐지 등의 중요사항 의결시 투표권을 갖는다. 다만, 준회원 및 협력회원은 투표권이 없다. <개정 1997.10.21., 2000.12.29., 2010.2.19., 2020.2.20.>
 - ② 정보통신표준총회에서 의결시 정회원의 투표권은 납입한 분담금 구좌수를 표수로 한다. 다만, 하나의 정회원이 총 투표수의 1/3이상의 투표권을 가질 수 없다. <개정 1997.10.21., 1998.7.28., 2010.2.19., 2020.2.20.>
 - ③ 제2항에 의한 투표권은 정보통신표준총회 의결에 한하여 적용한다. <개정 1997.10.21.>
 - ④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투표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표준총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개정 1997.10.21.>
- 제8조(탈퇴 및 제명) ① 사업참가자가 협회에서 탈퇴하고자 할 때는 그뜻을 서면으로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사업참가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그 사업참가자를 제명할 수 있다. 다만, 법인의 해산이나 자격정지후 2년이상 장기로 분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하고 연락이 두절된 사업참가자는 회장이 제명조치할 수 있다. <개정 2000.12.29.>
 - 1. 협회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
 - 2. 사업참가자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 3. 삭 제 <2005.9.26.>
 - ③ 사업참가자가 당해년도 분담금을 9월 말까지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시는 사업참가자의 자격이 정지된다. <신설 1997.10.21.. 개정 2011.6.28.>
 - ④ 탈퇴 및 제명시 이미 납부한 분담금은 사업참가자의 청구에 의해 월할계산하여 반환하며, 사업참가자로서의 모든 권리는 소멸된다. <개정 1997.10.21.>
- 제9조(위임사항) 이 규정에 정하여진 것 외에 협회의 사업참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회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1992.12.30.)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2. 12. 30.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 한국통신기술협회의 사업참가자는 본 협회의 사업참가자로 한다.

부칙 (1995.5.29.)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5. 5. 29.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5.29.)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7. 5. 29.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10.21.)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7. 10. 21.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7.28.)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8. 8. 1.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2.29.)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1. 1. 1.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3.18.)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9.26.)

①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2.24.)

①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2.12.)

①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2.19.)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기존의 사업참가규정에 의해 운영된 사항은 본 규정에 의해 운영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1.6.28.)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기존의 사업참가규정에 의해 운영된 사항은 본 규정에 의해 운영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7.11.2.)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2.19.)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2.20.)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1997.10.21., 2000.12.29., 2010.2.19., 2017.11.2., 2020.2.20.>

사 업 참 가 신 청 서

회사(단체명)	(한글) (영문)				종업원 수			명				
주소							전화	번호				
十二							FAX	번호				
대 표 자 명	직 위			업체유형								
설 립 년 월 일	년 월 일				자본금			백	만원			
연간매출액 (전전 년도)	백만원				홈페	이지						
주 종 사 업					관 A 분 O							
사업참가동 기					관심	PG						
	주	요제품(/	서비스	노 포함)								
사업참가 구분	정회원 준			준회	회원 (참여 위원회명)		협력 회원					
정보통신 표준	성		부			Ž	딕			전화		
총회대표 위원	명		서			<u> </u>	위			이메일		
연락실무자	성		부				딕			전화		
	명		서				위			이메일		
당사(소, 회)는 귀 협회의 목적과 사업에 동의하고 귀 협회의 사업에 참가코자 이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회사명(단체명):												
대표자명:						(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회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신설 1997.10.21., 개정 2010.2.19., 2017.11.2.>

사 업 참 가 확 인 증

No.

회사(단체)명	
주 소	
대 표 자 명	
사 업 참 가 일	년 월 일
기 간	20 ~ 20
사업참가구분	
분 담 등 급	

위 회사(협회, 연구소, 원)는 본 협회 사업참가규정 제3조에 의한 20 년도 사업참가자 임을 확인함.

20년월일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회장(인)

[별표 1] <개정 1997.10.21., 2000.12.29., 2004.3.18., 2010.2.19., 2017.11.2., 2020.2.20.>

사업참가자별 분담금 (제4조 관련)

1. 정회원 분담금

분담등급	매출액	구좌(Unit)수	분담금
1등급	10조원 이상	30구좌 이상	구좌당 분담금액은 이사회에서
2등급	1조원 이상~10조원 미만	2조 원미만 3구좌이상, 단2조 원 이상 시 1조 원 당 1구좌 추가	결정
3등급	5천억 원 이상~1조 원 미만	2구좌 이상	
4등급	5천억 원 미만	1구좌 이상	

- ※ 1. 비ICT기업. 공공기관. SW주력업종 및 방송사의 구좌수는 별도 협의
 - 2. 매출액이 없는 연구기관이나 단체에 있어서는 사업시행 당해년도의 예산총액으로 대신함
 - 3. 신설 회사로서 정상적인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자본금 1조 원 이상은 2등급, 5,000억 원 이상은 3등급, 5,000억 원 미만은 4등급을 적용함
 - 4. 매출액은 전전년도 매출액을 적용함
- 2. 준회원 분담금: 1구좌 분담금액의 2분의 1
 - ※ 준회원사는 협회의 사업참가 전전년도에 있어서의 매출액이 100억 원 미만의 회사에만 해당됨
- 3. 협력회원의 분담금: 분담금 없음

[별표 2] <개정 1997. 10. 21., 2000.12.29., 2004.3.18., 2010.2.19., 2017.11.2., 2019.2.19., 2020.2.20.>

사업참가자의 사업참가범위 및 권리

종류		사업참가자					
구분		정회원	준회원	협력회원 ^{주1)}			
우 원 회	정보통신표준총회	위원 1명	참관인 1명	위원 1명			
	기술위원회	참가	참가권한 없음	참가			
	프로젝트 그룹	참가	1개 기술위원회 산하 1개 프로젝트그룹에 참여	참가			
투표권 (정보통신 표준총회)		있음 (납입한 분담금 구좌수와 동등한 투표권)	없음	없음			
<u> </u>	의견수렴 -	통보	통보	통보			
글로벌프로젝트 (oneM2M, 3GPP, 3GPP2 등) 가입자격 ^{주2)}		부여	부여	부여			
자 료 보 급	표준	무료	무료	무료			
	위원회활동자료	참여위원배포	참여위원배포	참여위원배포			
	간행물, 번역 출판물 및 기타	무료 또는 유료(할인)	무료 또는 유료(할인)	무료 또는 유료(할인)			
기 타	유료행사	할 인	할 인	할 인			

주1) 협력회원으로부터 추천되는 위원은 해당단체의 사무국직원에 한하여 위원으로 참가할 수 있다.

주2) 해당 글로벌프로젝트 활동을 위해서는 별도로 가입 및 분담금 납부를 하여야 한다.